



프랑스 사형폐지에 관한 헌법개정

I. 시작하며

2007년 2월 19일 프랑스 의회는 양원합동회의에서 사형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2007년 2월 23일자 헌법개정법률 2007-239호로 공포되었고, 다음 날인 2007년 2월 24일자 관보 제47호에 게재되었다.

개정된 헌법 제66조의1 “누구도 사형에 처해질 수 없다.”(Constitution Art 66-1 : Nul ne peut être condamné à la peine mort)

프랑스는 이미 1981년 10월 9일자 법률(Loi n° 81-908, Loi portant abolition de la peine de mort)¹⁾에 의해 사형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까지 개정해가며 사형제도 자체를 완전히 뿌리뽑고자 하였다.

이번 헌법개정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계기는 국제법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II. 입법의 배경과 경과

1986년에 프랑스는 평화시의 사형폐지에 관한 유럽인권협약(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CEDH) 제6부속의정서를 비준했다. 이는 1981년 10월 9일자 사형폐지 법률을 변경할 수 없는 확고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제6부속의정서는 전시 또는 전쟁 중 급박한 위험에서 범한 행위에 대해 사형제도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사형에 대한 이런 예외를 유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국제적 운동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 국제적인 운동의 흐름 속에서 두 개의 조약이 탄생했다. 하나는 모든 경우에 사형을 폐지하는 유럽인권협약 제13부속의정서(2002년 5월 3

*** -----

1) 총 9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이 법률은 사형의 폐지를 규정하면서, 사형을 담고 있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일부 규정을 폐기하고, 향후 형사법 개정에서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과 사형을 예정하고 있는 범죄의 조문들도 무기징역이나 무기감으로 대체할 것을 규정하였다.

일 채택)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1989년 10월 9일자 뉴욕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제2선택의정서이다. ‘인권국가’ 프랑스는 당연히 사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되살리지 못하게 하는 이 조약들을 비준하고자 했다.

그런데 2005년 10월 13일 헌법평의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이에 관해 다소 특이한 결정을 내렸다.

〈헌법평의회 결정〉

- ① 모든 경우에 사형을 폐지하도록 하는 유럽인권협약 제13부속의정서는 헌법과 배치되지 않는다.
- ②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승인하는 것은 헌법개정 이후에만 가능하다.

헌법평의회는 뉴욕국제협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이 국가주권의 본질적 조건에 영향을 줄 것이고 결국은 헌법개정을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헌법평의회는 전면적 사형폐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폐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유럽인권협약 제13부속의정서 비준에 관해서

는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뉴욕협약 의정서의 경우, 일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입국에게 비준 이후 이에 맞는 입법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국가주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비준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유럽인권협약 의정서의 경우는 비록 일체의 예외나 유보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동 협약 제58조에 의해 폐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주권의 행사와 본질적으로 충돌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헌법평의회는 두 의정서의 내용에는 프랑스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조항과 모순되는 점이 없다고 함으로써 이를 수용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이들 국제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가장 모범답안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헌법평의회는 선택의정서가 프랑스헌법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결론적으로 헌법평의회는 선택의정서가 프랑스헌법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이번 헌법개정을 필요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프랑스를 헌법상 사형폐지를 명문화한 18개의 국가 그룹에

*** -----

- 2) 당시 법무부장관 Pascal CLÉMENT은 프랑스가 사형을 폐지한 지 이미 26년이나 지났음에도 유럽에서 최초로 사형금지를 헌법상 명문화한 나라가 되지 못함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위 두 조약의 비준과 헌법개정의 상관성을 언급하면서, 이 헌법개정은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고 다시는 복원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들 수 있게 하였다.

이후 정부제출법률안의 형식으로 헌법개정이 이루어졌고, 위에서 언급한 국가원수의 의지는 2006년 헌법평의회에서 있었던 대통령 연설에서, 행정부의 의지는 2007년 2월 7일 상원에서 있었던 법무부장관의 연설²⁾에서 다소 장황하게 표현되었다.

III. 맺으며

프랑스에서는 이미 오래 전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헌법개정으로 실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국제법과의 관계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입법의 완비를 통해 국가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그리고 흔히들 무시하기 쉬운 법의 ‘형식’에 대해 중요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해서는 해묵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한 듯 하다. 우리나라도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그것은 일반형사법인 형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처럼 가치관상의 논란거리가 되는 쟁점은 헌법적 결단을 통해 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프랑스의 예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 승 규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원)